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40
----------	-------

발의연월일 : 2026. 1. 5.

발 의 자 : 황정아 · 최민희 · 이주희
윤건영 · 주철현 · 허성무
장종태 · 박용갑 · 김우영
송재봉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중에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됨.

그런데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주요방송통신사업자를 지정할 경우 재난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부가통신사업자까지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는 트래픽 양 등을 기준으로 주요방송통신사업자를 지정하되,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단서,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제35조의2에 따른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5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제외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하 “방송통신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 ----- ----- ----- ----- ----- ----- ----- ----- ----- ----- ----- ----- ----- <u>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제35조의2에 따른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u>
1. ~ 5.(생략)	1. ~ 5.(현행과 같음)

② (생략) 제35조의2(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①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략) <u><신설></u> 2. ~ 6. (생략)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① ----- ----- ----- ----- ----- ㄱ.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u> <u>주요방송통신사업자 제외에</u> <u>관한 사항</u>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